

# I . 제27회 제국의회

1. 1911년 3월 10일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회의록 제1회

위원 성립

본 위원은 지난 9일 의장의 지명으로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사카키다 세이베(榊田清兵衛)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오노 히사지(大野久次)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나카누마 신이치로(中沼信一郎)  
반도 칸고로(坂東勘五郎)  
하야미 세이지(早速整爾)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후쿠다 마타이치(福田又一)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고데라 겐키치(小寺謙吉)  
도미타 코지로(富田幸次郎)  
아사바 시즈카(浅羽靖)  
스즈키 소우베(鈴木摠兵衛)  
오카자키 운베(岡崎運兵衛)

1911년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위원장과 이사를 호선하기 위해 각 위원이 모였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사카키다 세이베(榊田清兵衛)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도미타 코지로(富田幸次郎)

아사바 시즈카(淺羽靖)  
스즈키 소우베(鈴木惣兵衛)  
하야미 세이지(早速整爾)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연장자인 하마오카(濱岡) 의원이 투표관리자가 되었다.

- 투표관리자, 하마오카(濱岡)는 위원장과 이사의 호선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선언했다.
-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의원은 투표하지 말자고 하면서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사의 인원수는 세 명으로 하며 지명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투표관리자, 하마오카(濱岡)는 가스야(粕谷) 의원의 의견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고,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의원은 위원장으로 당선된 취지를 말했다.
- 위원장(노다 우타로)은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의원,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의원, 도미타 코지로(富田幸次郎) 의원을 이사로 지명한다고 알렸고,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 회의

출석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조선총독부 회계국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행법안

오후 1시 37분 개회

(이하 속기)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개회하겠습니다. 정부위원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조선은행법안은 한국은행조례라고도 하는데, 2년 전 11월에 한국은행을 설립할 때 구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기초하여 한국은행이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합할 때 당분간은 제령(制令)에 의해 종전 구한국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법령은 효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조례도 제령으로서 효력을 유지하여 한국은행은 오늘까지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한국은행이란 명칭은 현재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칭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설립 당시 태환권 보증준비의 액수를 2천만 엔으로 정한 것은 그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환권의 발행고가 1천만 엔 내외였기 때문에 우선 2천만 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증준비액을 2천만 엔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태환권의 발행액이 매우 증가하여 작년 말에는 2천만 엔을 넘었습니다. 이후 경제상황에서는 종래의 제한액으로 금융을 조화롭게 실시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한액을 3천만 엔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개정을 하려면 상법이나 은행조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모두 제정해 두어야 해서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문이 많지만, 구한국은행조례와 비교하여 명칭의 변경, 태환권 보증준비액의 변경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외는 글자를 다소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한 것이 많지만,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방금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은행은 합병 이전에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존재했고, 중앙은행이란 명칭을 그대로 존치할 생각이신데,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인 것 같은데, 다수 유통되는 곳이 조선은 물론이고 간도, 봉천(奉天) 등지에도 유통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상태인지. 혹 간도의 경우 약속한 곳에서 유통되는지. 요동반도의 경우 이러한 위치로 유통되는지. 대략적인 상황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중앙은행으로 존치시킬 생각이라면, 합병함으로써 현재 일본의 영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 이외에 특별히 지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세워서 한국의 정부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폐제(幣制)의 관점에서 보면, 지폐의 통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선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경성에서 화폐를 교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별도로 지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자를 변경하여 중앙은행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면 일본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환언하자면 대만의 대만은행과 조선의 조선은행과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병이 되었다고는 해도 역시 종전과 같은 방침으로 계속 업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합'으로 인해 다시 영업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태환권의 유통구역, 이것은 물론 조선 전체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안동현(安東縣)에 출장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동현 부근에서 다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4~50만 엔이 안동현 근방에서 유통되는 모양입니다.

셋째, 현재 병합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으로서 특별한 은행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한국은행을 설립할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재정은 일본의 감리에 귀속되어 있었고, 다이이치(第一)은행이 일본의 은행으로서 한국에서 일람불어음(一覽拂手形)을 발행하여 영업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이미 지금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상태는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각종 금융기관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물론 동산은행(動産銀行), 부동산은행(不動産銀行)도 각각 기관을 갖추어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은행 즉, 일본은행은 이른바 은행의 은행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업은행이나 기타 은행이 하는 업무를 일본의 중앙은행이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은행의 은행, 즉 중앙의 금융기관이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체제의 시행은 도저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종래 한국의 금융기관이라 할 만한 것이 정말 적습니다. 경성의 경우 조선인이 경영하는 보통 상업은행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설립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일본 내지의 은행이 조선에 지점을 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매우 적은 숫자로, 특히 경성, 인천, 부산과 같은 거류지, 아니면 개항장과 같이 일본인이 꽤나 살고 있는 곳, 상업이 번성하는 곳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는 일본의 은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라는 일본식의 은행을 설립하여 은행의 은행으로 세우고, 보통 상업은행의 일 등 어떠한 것도 하지 않도록 했지만 도저히 보통 상업은행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래의 다이이치은행이 우선 중앙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고, 역시 하는 김에 보통은행의 업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는 항상 수지의 계산이 맞지 않는 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는 특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이치은행에게 명하여 지점을 내도록 하고 그 곳에 금융의 편리함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한국은행을 설립했을 때에도 역시 이 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의 중추를 담당함과 동시에 보통은행의 업무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경성이나 인천과 달리 보통금융기관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은행의 영업이 필요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점에 있어서 내지의 일본은행과 같은 조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이 앞으로 손을 뺀다는 것, 즉 현재 일본은행의 영업방침에서 한국 금융에 손을 뺀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은행은 우선 중앙금융기관으로서 영업함과 동시에 보통은행이 하는 일도 다소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만은행의 예를 주로 참작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규칙이 대만은행과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한 은행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은행을 두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태환권을 공통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은행을 설치하면 당연히 그 특수한 은행에 태환권 발행의 특권을 부여할 필요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일본 내지 금융기관의 중추이기 때문에 태환권의 기초를 어느 정도 공고하게 해야만 합니다. 태환권의 기초에 동요를 불러오는 것은 현재 일본은행이 항상 피해야만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항상 동요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경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늘 경제상태의 동요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일본은행의 태환권을 유통시킨다면 아마도 일본은행 태환권의 기초가 동요될 수도 있다는 일본은행 측의 말에 입각하여 조선에는 특수한 은행을 설치하여 일본은행 태환권 이외의 태환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대체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일본 내지의 중앙기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특별히 한국은행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저는 두세 개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면 조선총독이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부위원이 말한 것처럼 현재 안동현에 그 출장소가 있고, 앞으로 이곳 이외의 장소에도 지점 혹은 출장소를 설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총독이 관할 이외의 장소에 있는 것까지 감독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앞으로 내지 기타에 설치될 경우, 조선총독의 관할 이외의 장소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총독이 감독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은행조례 40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에는 1백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무이자 대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은 이번 조선은행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채택한 것이었습니까? 이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조선은행이 이 일을 인계하는 것이라면, 이번 은행법에는 이것을 몇 년 내에 납부할 것인가란 규정이 필요없다는 의견입니까? 이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조선총독의 감독이라고 한 것은 조선총독이 조선에서 제반의 정무를 총괄하고, 보통 내지의 선례에 따라서 주무대신이라던가 아니면 은행의 일이기에 대장대신이라고 써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선총독은 조선의 정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선총독의 감독이라고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조선총독 이외에 이 은행을 감독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점을 설치할 경우 조선총독의 관할구역 이외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안동현 등 다른 곳은 내지에서도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조선총독은 은행업 전체에 대해 감독을 합니다. 내지에 지점을 설치할 때에는 대장대신이든 누구든 전례를 들어 지점 설치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행업 전반에 대해서 조선총독이 감독하기 때문에 그 외에 감독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안동현의 출장소 이하는 감독하지 않고.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감독하고 있습니다. 영업보고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에 따라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은행이 내지에 지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대장성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현의 경우 처음에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그 곳에 있는 사람이 부디 설치해주었으면 한다고 청구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동현의 영업보고는 본점으로 돌아옵니다. 본점이 총독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 총독부에서 훑어봅니다. 은행업은 본점과 지점의 자본이 독립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모두 하나인 금융관계로 인해 감독할 때 그 지점만을 불문에 부쳐둘 수 없으므로 이것 역시 감독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40조에...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창립 당시 1백20만 엔을 무이자로 대부하였던 것은 은행에 그 대부 명령을 부여하여 대부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명령에 따라 거치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정부에 상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창립 당시에 필요한 조문이었으나,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이어서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행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점이 본점에 보고를 하고, 본점이 감독하는 것이라면 지점 혹은 출장소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에 모두 모아서 감독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네요.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본점으로서 안동현은 본점 영업의 일부가 되고, 기타의 지점营业을 감독할 경우에는 총독부에서 감독합니다. 그러나 만약 안동현이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감독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감독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향후 엄격해질지 어떨지는 현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외국은행이 일본에 지점을 내는 경우 일본에서 외국은행을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동현의 지점은 영업에 대해서도 확실히 영업보고 등이 나오고 있으며 조선총독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감독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마찬가지입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내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내지에 있는 지점은 대장대신이 감독을 하지 않고, 조선총독이 감독을 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먼저 40조의 건에 대하여 이미 대부했다는 것은 설립 당시의 일이므로 지금은 갚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조의 2항에 따르면 상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이미 현재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명문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은행감독은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본의 은행조례에 따라 대장대신이 그 지점을 감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금 안동현의 사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조선총독이 이들 지점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시다면, 이 은행의 영업보고 등은 조선총독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대장대신이 은행조례에 따라 일본의 은행을 감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에서 일본이 은행 지점을 설치했을 때에 그 은행은 그 나라의 감독을 받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과연 외국의 경우 등은 그렇습니다만, 조선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이라면 외국에서 감독할 터인데, 일본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조선총독이 감독 한다면, 또 이러한 법률이 가능하다면, 대장대신이 어떤 지점을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까?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즉, 안동현 근처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보고에 따라 감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업을 감독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아키오카(秋岡) 의원의 질문은 -지점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총독의 권한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감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저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의 자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같은 자본 아래에서 지점을 내어두고 단지 손만 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지 외국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외국의 법률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업은 역시 본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동현에 있는 은행에 대해 내부 검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이 조선은행법이 성립하면 결국 한국은행조례는 전부 소멸하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아까 있었던 40조의 120만 엔을 대부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제 2항과 같은 규정은 여전히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은행조례가 전부 소멸하는 것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이 법률이 성립한다면 한국은행조례는 소멸하게 됩니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합병이 된 이상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앞서 중앙은행과 중앙이란 글자를 빈번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원(本眞) 등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 그 업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람불어음을 발행하는 점에서 대만은행과는 조금도 취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만은행은 대장성에서 모두 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합병 전과 동일하게 총독이 감독한다는 것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하마오카(濱岡) 의원의 말은 근본론으로 훗날 대장대신이 나와서 잘 이야기할 터이니 그때 질문하시는 편이 명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안동현 출장소에 대한 감독은 조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에서 조선은행이 지점 혹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장대신이 감독할 것인지, 조선총독이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규 조항을 보면 역시 조선총독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감독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어쨌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발행권은 준태환권과 같은 것인데, 내지에 출장소가 있다면 조선에서 발행한 것을 사용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감독의 문제는 일정 정도 명료하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내지의 은행이 조선에 지점을 둔다면 총독이 감독하는 것과 같고, 조선은행이 내지에서 지점을 낸다면 대장대신이 감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권은 조선 구역 내에서 유통하는 것이므로 조선 이외에서는 유통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안동현은?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신용으로서 유통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한국은행은 융희(隆熙) 3년 법률 제22호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조례는 거기서 부수한 칙령적인 규정입니까? 즉, 한국은행조례는 통감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행조례의 성질은 역시 22호의 취지에 기초한 칙령적 규정입니까? 다만 한국은행조례라고 해도 이것은 역시 입법사항으로서의 규정인지, 단순히 통감 일 개인의 명령적 사항인지, 특히 병합 후에는 조례 등은 몹시 성가신 제령이 되었는데, 이 한국은행조례는 어디에 속합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한국은행은 융희 2년 구한국의 법률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병합과 함께 그대로 둔다면 그 법률이 소멸할 터이므로, 제령으로써 그 효력을 존속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제령으로써 그 조례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오늘 배포한 표에 따르면 화폐유통액(貨幣流通高) 가운데 구백동화가 1910년 말에는 없는데, 지금도 없는 것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구백동화는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은행권 2,016만 엔 가운데 정화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정화준비는 3분의 1을 내리기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3할 4분위 정화준비를 두고 있습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한국은행은 조례에 따라 지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물론 회사령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령뿐만 아니라 일부는 모국의 상법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한국은행조례는 회사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터입니다. 조선은행조례의 제1조에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상법의 주식회사란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관해서는 상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회사령 지배는 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물론 회사령에 저촉되는 점은 받지 않겠지만, 저촉되지 않는 일반의 회사령 규정에 대해서는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제령은 특히 조선에서 시행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령은 회사의 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법률로써 회사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제령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으며, 회사령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제일은행권 상각자금의 대부분 748만 엔의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제일은행권을 상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그 상각을 끝낼지, 무언가 말할 조건이 있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이것은 제일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이 업무를 계속 이어올 때의 것으로 제일은행 은행권은 모두 한국은행이 상각할 의무를 담당한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금입니다. 그것은 20년 부로 상각한다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각의 잔액이 748만 6,000엔 남아 있습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제 8장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전 한국은행조례에는 1천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과료에 대한 하한을 제한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형벌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하한으로 100엔을 붙여서 100엔 이상 1천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해야 할 범죄들을 조사해보면 그 중에는 충분히 가벼운 것도 포함된 것처럼 보입니다. 즉 무리하게 100엔 이상이라는 제한을 붙이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00엔 이상이라고 제한을 붙이게 된 것입니까? 특히 최근 형벌에 관한 입법 상 보통의 관례는 하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100엔 이상이란 제한을 붙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구법을 고쳐서 신법에 100엔 이상을 붙인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신법의 제40조에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20엔 이상 200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란 “총재와 이사가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구법을 보면 구법은 그 외의 벌칙과 동일하게 “1천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그 정황이 가벼워서 20엔 이하더라도 15엔의 과료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구법은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한도 넓게 되어 있어서 정황이 무거운 경우에는 1천 엔에 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법은 하한에 대해서도 상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구형법과 같이 좁은 범위에 한정하는 주의를 취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총재와 이사의 경우도 정황의 경중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그 외에 1백 엔 이하 1천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고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히 무거운 경우도, 가벼운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신 법안에서 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1천 엔 이하라고 하여 하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다른 특별한 종류의 은행이 모두 1백 엔 이상 1천 엔 이하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행, 일본권업은행, 일본흥업은행, 홋카이도척식은행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에 대해서 벌칙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0엔 이상 200엔 이하, 이것도 다른 은행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지만, 역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답변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아서 안 됩니다. 오히려 답변의 취지에 따라

대만은행 같은 기타의 예를 모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일본의 입법 역사에서 볼 때 퇴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즉, 형법이란 별의 법률로 근본 법률인데, 이 형법이 이전의 오래된 시대에는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없애 좁은 범위에서 별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소간 이러한 식으로 아래에 제한을 단절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범에 대하여 경중의 차란 것이 무거운 정황의 경우도, 가벼운 정황의 경우도 있어서 천차만별이므로 이렇게 해야 할 제한을 철거하여 넓은 범위의 형벌을 제정하고, 그리하여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넓은 범위에서 경중의 구별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 가벼운 자에게는 어디까지나 가벼운 것을 가지고 가고, 무거운 자에게는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입법례는 형법을 근거로부터 개정하면서 모두 이것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대만은행법과 기타의 정부위원이 단지 이것을 모방했다고 한 모법인 법률이 나왔을 때에는 역시 이러한 구형법의 시대였습니다. 구형법의 시대란 곧 입법의 역사에서 말하자면 과거의 낡은 사상이 발휘되고 있던 경우에 나온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따라 모처럼 이렇게 새롭게 한국의 조령(條令)이란 것이 진보한 법률사상을 채택해 가서 1천 엔 이하란 넓은 법률을 만들었던 것을 오래된 구 형법을 흉내 낸 법률로 바꾼다는 것은 일본의 역사에서 볼 때 퇴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가급적 대만은행법을 본떴다고 한다면 옛이야기로 퇴보했음이 분명하니 만약 이 점을 수정한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혹독하게 고집할 정도로 강력한 결심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법률을 모방해서 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은행으로서 유사합니다만 은행의 균형을 취하기보다도 오히려 진보한 형벌을 따르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한다고 하는 쪽이 일본 형벌법의 일반 사상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들이 수정할 때에는 동의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방금 말씀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저는 본회에서도 조금 들었습니다만, 이 조선은행을 이 법률로 제정한다면 형편은 지극히 찬성할 터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이러한 조선총독의 의지가 된다면 거의 조선총독 만능 - 무엇이든 조선총독이 전권을 가지고 조선을 통치하려 한다는 주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요컨대 설명과 같이 명칭의 변화, 보증의 준비가 중요한 점인데, 명칭을 한국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오직 형식상의 문제로 별것은 아닙니다. 또 보증준비의 변경 같은 것도 일부의 변경에 그치며, 조선총독의 지위에서 말하자면 역시 제령으로 한다면 처리가 됩니다.

일부러 법률안을 제출하여 협찬을 요구한다는 주의는 무엇보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인데 법률로 제정한다는 취지는 가장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만약 깊은 취지가 없다고 한다면 조선총독의 제령으로 간이하게 이것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한다는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만능주의의 결과로 총독은 그 지위로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것처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만약 이것을 제령으로 제정한다고 하면 제령은 조선총독의 관할 내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조선총독 관할 이외에서 예를 들어 내지에서 은행의 주식회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은행은 조선 내에서만이 아니라 내지와외의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경우에 내지에서 이 은행은 제령에 따라 성립하였기 때문에 회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법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하마오카(濱岡) 의원에게 잠시 말해 두겠습니다. 대장대신은 오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 조회하여 두겠습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지금 답변으로 한국은행주식회사로 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제정에 있어서 일본국의 주식회사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두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국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제령으로써 정해 둔다면 좋습니다. 일본 모국의 주식회사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 점에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칙령으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로서 일본 모국의 주식회사 규칙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따라 이 제령을 상법의 주식회사 규칙에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법률으로써 제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방금 나온 이야기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법률론인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행조례에는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령을 통해 그 효력을 갖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제령은 조선총독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제령으로 성립한 것은 관할 이외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론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법률을 제정하여 둔다면 논의의 지점에서 염려는 없으므로 법률으로써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선에서 칙령이나 다른 무엇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곧바로 상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조문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법의 주식회사로 인정하려면 아무래도 법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 회가 있을 것 같으니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겠습니다. 산회합니다.

오후 2시 45분 산회.

2. 1911년 3월 11일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회의록 제2회

메이지 44년 3월 11일 오전 11시 개의.

출석위원은 다음과 같다.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사카키다 세이베(榊田清兵衛)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오노 하사지(大野久次),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도미타 코지로(富田幸次郎)  
아사바 시즈카(浅羽靖),  
오카자키 운베(岡崎運兵衛)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출석 국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출석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대장차관 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조선총독부 회계국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의안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행법안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사바 시즈카(浅羽靖)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17조의 제4항으로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란 것입니다. 여기 조선에서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란 무언가 대체로 중대한 담보로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농공은행에 자금을 빌려준다면 한국은행의 성질은 역시 이 본안에 나열하여 기록한 이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공은행은 역시 대부를 한다고 하면 농공에 대해서도 권업은행처럼 실질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확실한 담보, 이것은 주로 일본인 사이의 대부라면 확실한 유가증권, 공채증서란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어찌 되었든 유가증권이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담보물(見返品) 등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농공은행에 대하여 대부한다는 것은 농공은행의 성질을 이야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공은행은 내지의 농공은행과 어느 정도 취지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내지의 농공은행의 규칙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상업은행이 현재 개항장 등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로의 반입과 산업은행이 완전히 없습니다. 따라서 농공은행으로 하여금 보통은행의 영업을 겸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농공은행을 설립했던 오늘의 실제 상황은 농공자금으로 융통하고 있는 금액에서 상업자금으로 융통하고 있는 쪽이 다수의 위치를 차지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상업자금의 융통은 한국은행이 역시 농공은행에 대하여 융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18조의 첫 번째입니다만,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대부와 같은 것은 17조 안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18조로 가지고 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또 18조에 따르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공공단체에 대부할 때 매번 총독의 인가를 얻는다는 의미가 되는지 그 점을...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조선은행은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의 직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질문하신 것처럼 일본의 중앙은행이란 성질을 달리 하여 오히려 대만은행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환권을 발행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태환권이란 것은 알고 계신 것처럼 언제라도 예금인출을 청한다면 교환에 응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행이 공공단체에 대부하게 되면 많은 자본이 침식당하게 됩니다. 장기의 대부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무담보로 대부하는 것은 우선 어느 정도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줄곧 태환권을 발행하여 중앙은행의 직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당연한 영업이라는 이유로 공공단체에게 무담보대부를 하게 되면 태환권의 기초에 동요를 초래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에 대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거류민단이 다수 있습니다. 이 거류민단이 대부를 청구하더라도 별도로 대부할 은행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은행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변칙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총독의 허가를 거치므로 18호에 규정했던 것입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지금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대부는 한 건마다 매번 총독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이 됩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렇습니다.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제20조의 단서로 “조선총독의 명령에 기초한 경우에는 이러한 한도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총독의 명령이 있다면 어떠한 대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서를 붙인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이것은 조선의 현재 사정에서 이 조선은행이 운영하는 보통의 영업 이외에 어찌되었든 융통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선총독이 명령을 한다면 대부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간간히 사례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조선 인삼 조합을 발기하여 인삼을 개량했고, 보통의 영업에서 그 인삼조합에 대부한다면 무언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담보도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감독하고 있는 조합이므로 이것만의 금액을 한정하여 대부해주고자 했습니다. 그것만은 정부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 이유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대부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 장래에 조선귀족이 현재까지의 채무를 정리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은행으로 하여금 융통하도록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여 이러한 사정에서 이 1항을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대장대신이 출석하셨는데, 용무로 바쁘시니 근본적 질문이라면...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대장대신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다분히 합방 전 한국중앙은행을 조선은행이라고 고쳐서 내놓았던 것인데 잠깐 전체를 보면 오직 명칭을 바꾼 것이며, 한국정부가 총독부로 바뀌었다는 점, 보증준비란 점으로 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르러 대장대신에게 여쭙고 싶은 바는 이미 이와 같이 합방이 된 이상 가급적 모든 것을 가능하다면 중앙으로 만들어서 안팎으로 지장이 없는 한 조선과 일본이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은행과 같은 것은 일본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대만은행처럼 모든 은행은 대장대신이 곧바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행에 대하여 특별히 조선총독의 감독으로 위임하는 것은 어떤가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 지폐 등에 대해서도 감독상 구구(區區)한 것은 경제상 어느 정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치상 만주에서 철도가 연합함과 동시에 조선은행 지폐라는 것도 점차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장대신의 감독으로 되는 쪽이 좋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삼스레 이것을 총독이 감독하도록 한 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방금 하마오카(濱岡) 의원의 말씀은 뛰어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식민지의 통일, 그 가운데 재정의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또 재정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장대신이 감독하는 은행이면서 중앙으로 통일하는 명칭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것은, 하마오카 의원의 질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아시는 것처럼 대만과 그 취지를 달리 하며, 또 총독의 입장에서도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러한 대체적인 선상에서는 일본정부를 별도로 하고, 총독이 무슨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법률 아래에 입각하여 그 일부의 권력을 갖게 하도록 한 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총독에게 위임한다면 구구(區區)한 범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총독이 감독하도록 하고, 그 위를 정부가 감독하기 때문에 괜참을 것이라 생각하여 총독이 이를 감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점에 대해서는 철도라던가 전신과는 달리 신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기타의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일본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가 총독에게 훈령으로서 보여주고, 아니면 대장성에 구속된다는 점을 대장대신과 엄중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요컨대 이 점은 총독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구구한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총독이란 문자를 여기에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마오카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또한 정부에서도 우려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전신 같은 것들은 모두 총독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일에서 대장대신이 감독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사태에서 구구하게 됨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총독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며, 통일되지 않음을 초래할 경우에는 일본정부 아래에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취지로서 총독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방금 하마오카(濱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리대신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인데, 부디 이것을 총독에게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이유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 전신이란 이야기도 있었는데, 역시 대만에서도 철도 아니면 전신 같은 것도 대만총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행의 감독도 대장대신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대장대신이 역시 조선은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모든 일반의 은행을 대장대신의 감독 아래에 두지 않는다면, 이 은행 하나만을 조선총독의 감독 아래에 둔다는 것은 재정·경제상의 통일에서도 몹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디 총독의 감독 아래에 두어야만 한다는 점을 고수하실 것입니까? 경우에 따르자면 대장대신이라고 하더라도 역지로 반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아키오카(秋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면에서 보아 내려졌더라면 어떡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아키오카 의원의 의견대로 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혹시 뛰어난 의견이지 않은가 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면에서 보시게 된다면 총독이 이것을 모두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임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혹시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자본을 늘리도록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은행의 움직임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점은 물론 가능합니다만, 큰 사정에 대하여 재정의 대체적인 문제에 관계하는 것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총독의 능력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면에서 살펴보시게 된다면…지금 아키오카(秋岡) 의원이 우려하는 점으로, 형식을 이처럼 한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쪼록 바라는 바는 원안의 총독이란 문자는 놓여 있으므로, 그리고 재산상 대체의 감독상에 있어서는 일본정부 즉, 대장대신이 통일해야만 합니다. 또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총독이 자유자재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면의 측면에서 이것을 보아주신다면 승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만약 이 은행의 감독을 조선총독이 하게 된다면 과연 본점과 한국의 지점 출장소 같은 것은 이 법률에 따라 총독이 감리관을 두어 그 감독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지에서 이 조선은행의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총독이 내지에 있는 지점을 감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할 경우 내지에 있는 지점은 보통의 은행조례에 따라 대장대신이 감독하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감독할 방도가 없게 된다면, 본점에 대한 감독과 지점에 대한 감독에 구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역시 대장대신의 감독 아래에 두는 편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한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내지에 있는 것은 물론 직접 감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장대신이 보통은행과 마찬가지로 감독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모쪼록 이것은 이면에서 관찰하시어 판단을 하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방금 대장대신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본원 등은 특히 기우였습니다만, 이 금융기관이란 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각종 이상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감독관이 처치하지 않으면 비상하게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장대신의 이야기처럼 해서 총독부가 바로 감독이 되고, 그 위에 또한 대장대신이 감독이 된다는 것처럼 된 이상은 만약 경제계에 변화를 일으킨다던가, 충분히 만주에 접하고 있는 바가 있으므로, 혹시 외교상에서 경제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행에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쇼킨(正金)은행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처럼 다양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한국이 추진해 와야만 합니다. 이 은행은 원래 말씀드리자면 한국중앙은행이란 것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명칭은 한국이라든가 조선이란 것으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더 전진하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은행이라고 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통일이란 생각 위에서 지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이상, 이와 같은 일도 있을 터이니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러한 일을 감독한다면 생각못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장대신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된다면 각별한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독으로 맡기어 전체의 완급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상의 편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가장 적절한 우려이자, 가장 적절한 논의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장대신이 이를 관할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조선의 일은 역시 조선총독에게 위임해야만 합니다. 직접적인 감독은 어찌되었든 조선총독이 하도록 하는 편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앙에서 모든 실질을 늘려 간다는 것은 번잡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대장대신이 감독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총독부에 위임해야만 한다는 점은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하마오카(濱岡) 의원의 기우가 되는 점은 무언가 방법을 취하더라도 역시 중앙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의 경제상으로 관계가 있다는 형편은 총독 스스로가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조금 이야기한 은행의 자본을 증액한다던가, 아니면 해외와의 거래에 관계되는 일이 가령 생긴다고 하더라도 조선총독부란 명칭을 가진 것을 런던시장에 가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아니고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으로 한다면, 무엇으로 하든지 조선총독이란 명칭을 가지고 커다란 금융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대장대신이 우려하여 역시 정부가 감독을 해야만 하므로, 요컨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니면 훈령에 따라 정할지, 혹은 엄중한 단속을 함으로써 총독의 권한을 묶어둔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하마오카 의원의 기우처럼 만약 경제계에 변동이 온다면, 아니면 금융상으로 하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물론 총독에게 일임함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일본정부 스스로-일본정부 자신, 즉 대장대신 스스로 그 충격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모두 대장대신이 관할하고 있는데, 총독에게 위임하여 총독의 명칭을 지니고 있더라도 대장대신의 감독을 받아서 관할하여 실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쨌든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모쪼록 통일한 다음 이 명칭을 총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로 해석하신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키오카(秋岡) 의원의 우려도, 하마오카 의원의 우려도 양쪽 모두 지극히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 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단순하게 총독이란 명칭을 붙인데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어찌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만 합니다. 또 가령 대장대신이 관할하고 있더라도 총독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모쪼록 해야 할 일은 이 명칭을 들지 말지인데, 어떻습니까...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아주 좋습니다만, 일본은행과 대장대신 사이에 상당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경제상으로 변동을 초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지금 대장대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독에게 위임이 되어 역시 책임은 대장대신이 지도록 하는 편이 일반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임을 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총독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역시 간접적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실제로 원만하게 가고 있는 동안은 각별하나, 여러 사람들이 바뀐다면 또한 의견도 바뀌게 되므로 어찌되었든 이것은 중앙에 두어야만 합니다.

○아사바 시즈카(淺羽靖)

한 가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수상으로부터 질문에 대하여 아주 좋다고 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식민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홋카이도(北海道) 등의 척식 사례를 보면 척식은행은 대장성이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도청(道廳)은-장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척식상으로 장려해

나가는 것이 어딘가 은행과 연락이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척식은행이 척식하여 나간다는 목적과 배치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그 척식의 기관이 도리어 척식의 기관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당국자는 알고 있으나 일본의 국민은 식민이라는 것에는 조금도 지식이 진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대만은행도 이 은행의 법안처럼 해야만 하는 지금, 이러한 식민지로 하여금 만약 총독이 대장성의 실제와 떨어져 있고, 실제로 우월한 감독자 아래에서 제약을 당해서는 결코 조선의 척식이란 것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기관을 설치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식민지에 가서 조사한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의심을 갖지 않으며, 결코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명확하지 않은 바를 여쭙어보고 싶다는 말은 벌써 철도도, 안봉선도 만들어진 위에서 보자면 점차 조선과 이웃나라와의 거래가 활발해진 경우에는 이러한 조선은행은 자유롭게 그 영업구역을 넓혀 이웃나라의 구역 바깥으로도 총독이 영업업무를 확장하고, 그 이웃나라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에게 충분한 편리를 제공하게 될 뿐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급적 조선의 구역 내로 하여 둔다는 취지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아사바(淺羽) 의원의 좋지 않다는 점에 답변을 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키오카(秋岡) 그리고 하마오카(濱岡) 의원에게는 경제상에서 대체적으로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곧 동감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사바 의원은 그 움직임에 대한 논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점은 가령 대장성이 관할하고 있더라도 총독에게 위임하여 하도록 했다는 것은 아사바 의원의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정해 두지 않으면 좋지 않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이 두 가지의 점에 대하여 꽤나 속기록이 있으므로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점에 대하여 이것은 은행법을 논의하면서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로서 이것은 지금 아키오카 의원인지, 하마오카 의원이었는지 이 은행의 움직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한 걸음으로 강을 건너는 처지라는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이 조선은행을 정한다는 것은 법률을 정하는 선상에 있어서 그다지 분명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이 은행의 감독에 대하여 아까 대장대신의 설명이 있었고, 그 말 가운데 이면에서 보아 달라든가, 아니면 법률제정 상에서 이러한 투로 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감독의 의미는 결국 제1차의 감독은 조선총독이 했으나 제2차에서 최고의 감독은 역시 정부가 한다는 의미가 이면이란 의미입니까? 그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해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장대신으로 한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법문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대장대신이 대만은행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은행의 감독자를 조선총독으로 한다, 즉 조선은행을 대할 때에도 대만은행으로 대할 때와 대장대신의 위치는 같다고 보아도 좋겠습니까? 그것으로 제1차의 감독을 조선총독으로 한다면 제2차의 감독은 물론 정부로 해야 하므로 대장대신이 제2차의 감독으로—정부가 제2차의 감독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그건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조선은행의 최고권은 모두 조선총독에게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신영토의 경영으로서 조선총독에게 이러한 최고의 권리를 부여할 사정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규정이 또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독 총재의 임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총독의 추천에 따라 정부가 이를 임명한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정부가 조선은행을 대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9조의 총재 임명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총재 임명에는 중요함을 두어 규정된 규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거의 총독 만능이므로 이 조선은행의 최고권을 모두 조선총독에게 위임한다고 한 이상은 어쨌든 총재를 특히 정부가 임명할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총재 임명의 권리를 정부에 유보한다면 다른 권리도 역시 정부에게 유보해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정은 전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감독의 권리도 조선총독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권한을 조선총독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부가 총재를 임명한다는 것에 대해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통의 회사라고 한다면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곧 회사의 중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보통의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총재의 임명을 조선총독의 추천에 따라서 정부가 임명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중대하게 규정하였는데, 다른 것과 비교하여 여기에 중대한 이유가 존재하는 까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방금 다카야나기(高柳) 의원의 첫 번째 질문, 즉 이렇게 된 이상은 대만과 조선 사이에 정부가 직접하고 있는 권한은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한편에서는 대장대신이 이것을 감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총독이 이를 감독한다고 쓴 이상은 그 법조문 위에서 정확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에 있어서 총독의 권한과 대만총독의 권한이 다소 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재의 임명 즉,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최상의 감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잠깐 저는 여쭙어보고 싶은데, 제가 약간 지금 의문을 품은 것은 방금 다카야나기(高柳) 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리대신의 설명에 따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은행법 가운데 예를 들어 제3조와 같이, 또는 제4조 즉 하나는 존립기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자본금 증가에 관한 개별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총재 임명 과 함께, 이 은행으로 하는 것에는 중대한 형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자본금의 증가 같은 것은 우리의 재정·경제상으로도 비상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시 정부 쪽에서 그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조선총독의 권한으로 이것을 맡길 수 없다는 쪽이 도리어 알맞지 않겠습니까?

과연 혹시 자본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권한을 연장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 은행법을 역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권능은 역시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식으로 해둔다면 어떠한 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만약 이를 수정한다면 어떠한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여쭙어 두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아까 설명해 두었던 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총독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여 움직임이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어찌 하더라도 중앙의 허가를 얻은 이후가 아니라면 실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법조문에 쓰여 있느냐의 여부란 하나의 의견이므로, 조선에 한하여 이것을 하기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조항을 충분히 붙여 두겠습니다. 아니, 조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정부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또 법률에 대해서는 제국의회 의 협찬을 거쳐야만 한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스야(粕谷)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하마오카(濱岡) 의원의 말씀, 아키오카(秋岡) 의원의 말씀과 총리대신의 말씀도 제가 듣기에는 양쪽 모두 정확한 것처럼 들립니다. 다만 대장대신이 이 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일체 어떠한 권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관제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까? 조선총독에게 은행감독의 권한을 법률로 위임한 이상은 여기에 대하여 대장대신이 감독한다는 것은 조금 물어보아야만 할 의문이 생기는데, 관제에 기량이 없습니다만 관제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이것의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독 그 자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대신은 곧 정부의 대신입니다. 환언하여 대체를 말씀드리자면 정부로 알고 계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국의 정부로 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대장대신이 감독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쓰라(桂) 후작은 데라우치(寺内) 자작을 감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장대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정부, 즉 대장대신...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정부로서 조선총독에 대하여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은행에 직접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법률로 한 이상은 총독을 통하여 감독합니다.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총독 그 자는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그렇게 한다면 역시 확실해집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어떻습니까? 오늘도 벌써 12시가 되었으니, 여기서 폐회하고 오늘 1회 열기로 했으므로...

○내각총리대신 겸 대장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桂太郎)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몇 번이라도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월요일 오전부터 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산회.

오후 0시 1분 산회.

3. 1911년 3월 13일 중의원 조선은행법안위원회 회의록 제3회

메이지 44년 3월 13일 오후 1시 25분 개의.

출석위원은 아래와 같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사카키다 세이베(榊田清兵衛)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오노 히사지(大野久次)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후쿠다 마타이치(福田又一)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오데라 겐키치(小寺謙吉)  
도미타 코지로(富田幸次郎)  
아사바 시즈카(浅羽靖)

출석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씨,  
조선총독부 회계국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씨.

본일 회의에 상정하는 의안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행법안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개회합니다. 질문회를 열겠습니다. 제1장만으로 하여 자세하게 질문이 있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조선은행의 지점대리점 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또 가까운 장래에 설치할 기미가 있는 개소(個所)가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지점이 5개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 평양, 원산, 대구, 그리고 오사카뿐입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9개 있습니다. 장래에 이것은 주로 금고 사무에 관계하기 때문에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구역에서 점차 지불이 많아진다면 출장소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좋습니다. 장래에 증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어

디에 증설한다고 현재 견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제6조에 정부는 조선은행의 주식 3만 주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전에 한국정부가 인수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고과장(考課狀)을 보면 그 주(株)의 소유자 명의를 조선총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 이상은 종래의 예에 따르면 대장대신의 명의로 되는 것이 알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조선은행만으로 한정하여 정부의 주식보유를 조선총독의 명의로 해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하여 조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건은 조선총독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대표자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라고 봅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저는 제6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스야(粕谷)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6조의 제1항 규정이란 것은 한국정부가 당시 인수한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전과 같이 만들었는데, 저번에 제가 질문했던 49조입니다. 이 49조와 같은 내용은 한국정부 당시에 만든 구법의 49조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일은행 쪽으로 반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이번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논법에서 말하자면 제6조의 1항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형평상으로 어떻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이것은 주로 제2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본질적인 제1항을 넣었고, 제2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영구히 권리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다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방금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2항의 필요를 위해서 제1항을 내걸었다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역시 구법의 제40조 120만 엔을 대부하였던 것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히 신법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항에 5개년 거치 10년 부로 상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제6조의 제2항이 필요하다면 구법의 40조 제2항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49조도 마찬가지로 장래에 관계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같은 관계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말씀드립니다만, 이 6조의 제2항이란 것은 역시 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한국은행의 모든 것은 역시 이 신법에 따라 조선은행의 행위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또 조선은행은 한국은행의 명칭을 변경한데 불과하므로 조선은행 역시 이 법률에 기초하여 한국은행이 설립한 당시에 성립했던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규정이 특히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 같은 것은 만약 구 40조와 같이, 아니면 구 49조처럼 정부가 해석하여 이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6조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봅니다. 그러한 차별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제40조입니다만, 제40조는 120만 엔을 제일은행에서 업무를 인계할 때 무이자로 대부했습니다. 그 120만 엔은 20년 부의 상환으로 대부한다는 처분을 인계할 때 실시했습니다. 과연 연부(年賦)이기 때문에 모두 반제(返濟)로 되어 있다고는 해도 권리 의무의 관계는 창립 당시에 입각하여 처분은 여기에서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제6조 쪽은 정부가 권리를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없을 경우 장래 정부가 권리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무엇이든 정부가 법률로 속박되어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묶여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라고는 해도 권리를 분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이렇게 권리를 분리한다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정은 구법, 즉 한국은행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명의를 조선은행으로 변경하더라도 정부의 권리 의무가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은행과 정부의 관계는 구한국은행과 정부와의 관계로부터 조금도 변경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법에서 정부는 주식에서 권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6조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것은 구한국은행법에 지점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2조에 그것을 적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결론이 될 수 없지만, 처분이 되었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조문으로 규정해 둘 수 없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정부는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지 않겠지만 그 때문에 역시 이 법조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그 점은 의견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문에 이러한 권리의 분리란 문자인데, 이것은 어떠한 법률용어입니까? 물론 이 의미는 주식을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구법의 문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법률문구는 무엇에 근거하여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기묘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정은 입법의 조문 사례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구 조례에 권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분리란 문자는 일본의 구상법과 특별은행법 등에는 상당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권리의 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자면 방금 질문하신 대로입니다.

○후쿠다 마사이치(福田又一)

이러한 권리의 분리란 문자는 오늘 실시하고 있는 문자로, 권리의 분리란 것과 같은 의미의 문자는 없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권리의 분리란 문자를 사용한 법률이 현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란 질문이십니까?

○후쿠다 마사이치(福田又一)

권리의 분리란 의미의 문자를 사용한 법률용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문자와 이것을 바꾸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제2장과 제3장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저는 이 13조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감독의 전원 운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일본 은행의 조례라던가 무엇에 전원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저 감사역(監査役) 한 사람이더라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13조에 “감사의 전원”이란 문자를 사용한 것은 어떠한 취지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다른 곳에서 이것은 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감사의 전원 청구로 성립하고 있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기타에는 이러한 예가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규정을 해야만 합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것은 주주의 편에서도 자본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 총회를 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를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전원 청구에 따라 개최하기로 한다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그렇다면 감사의 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와 같은 일이 있다면 폐해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별로로 폐해까지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저는 제9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대장대신에게 여쭙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은 바는 이러한 총재의 임명에 한하여 정부가 임명권을 가지고 조선총독은 오직 추천에 그치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총독이 가볍고 정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기타는 조선총독이 비상하게 중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감독 즉, 최고의 감독권까지 조선총독에게 부여해 둔다면 이러한 총재의 임명에 한하여 정부가 이것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경중의 차별을 붙인 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2항에서 이사는 2배의 후보자 가운데 임명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임명하고 있습니까?

물론 법조문 상으로 말하자면 2배의 후보자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총독의 권능인데, 실제로는 우선 최고점은 주주의 신임이 있는 자가 많아서 최고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점의 순서에 따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제3항의 감독 임기입니다. 감독을 특히 2년으로 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보통 감사역의 임기는 물론 1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행-대만은행의 예를 좀 알지 못합니다만, 이 조선은행의 감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2년으로 했다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이러한 조선총독의 추천에 따라 총재를 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이미 저번에 총리대신이 설명하신 대로입니다. 즉, 총재를 조선총독의 임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이를 임명한다는 것은 총재의 직무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결과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배의 후보자 가운데서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방금 질문하신 대로 당연한 사실에 있어서는 최고점자중에서 채택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지극히 책임자라고 인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실제의 사실로 대다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다른 은행은 모두 1년이라는 말씀이신 듯한데, 특별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는 3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대만은행은 3년, 그리고 일본은행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은행을 창립했을 당시 다른 은행에서는 이사의 연한 등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 사람의 중역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있다면 재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감사의 임기는 2개년 단위가 지당하리라고 생각하므로 2개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4장 가운데 질문하겠습니다. 제17조의 2호인데, “평상시에 거래하는 제 회사와 은행 또는 상인의 위체수형금(爲替手形金)의 징수”라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 또는 상인으로는 물론 은행이 들어갈 터인데, 새삼스럽게 은행이란 문자를 여기에 추가한 것은 무언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제2항의 “전항 이외의 영업 형편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권, 기타 조선

총독이 지정하는 확실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란 조항이 있는데, 조선총독에게 지정 될 견적의 유가증권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질문하신 취지는 제반 사회이고 그 가운데 은행이 포함되므로, 특히 은행이라고 내걸지 않아도 좋다는 질문이십니까?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그렇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러나 은행은 반드시 회사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그것은 아래에 상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에게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보통상인이라고 하는 가운데는 은행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은행은 보통상인 이외에 특별한 문자로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은행이란 문자를 넣은 것은 은행의 징수금까지도 취급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확실한 유가증권, 이것을 어떠한 증권으로 할 것인가란 점은 장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리 다수의 증권이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보호감독을 하고 있는 농공은행, 그 농공은행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채권은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위치의 채권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인정하여 이 가운데에 지정했습니다.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이러한 조선은행이 조선의 중앙은행이란 점은 정부위원의 설명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18조에 따라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는다면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대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대부란 정확히 일본권업은행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부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20조에서 조선총독의 명령에 따라 조합에 자금을 대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권업은행 아니면 흥업은행과 같은 대부방침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기관의 통일을 꾀하고, 재정경제의 조화도 도모합니다. 그에 더하여 또한 권업은행·흥업은행의 영업까지도 더불어 하더라도 그 중앙은행인 실질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방금 질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두려고 합니다. 조선은행은 이전에도 설명한 대로, 조선에서는 우선 중추의 금융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입니다. 일본은행처럼 은행의 은행인 중앙

은행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현재 중앙은행 이외 권업은행도 있고 그리고 흥업은행도 있으며 또한 상업기관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이 있는 곳에 가서 융통을 부탁한다면 결코 중앙은행이 거기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좋으며, 또 지원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정은 이와 달리 각종의 금융기관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거기에는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그 업무를 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개발상 비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은행에 대하여 저러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융통의 방도를 부여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 은행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행은 마치 대만은행과 같이 특수한 은행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18조에 적혀 있는 내용은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에 18조의 12호 같은 것에 대하여 융통을 꾀하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은행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총독의 인가를 받아 공공단체에 대부할지,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지란 방도를 붙여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개발상 현재 어쩔 수 없는 점이므로, 그 외에 완비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물론 태환권을 발행하는 은행이 공공단체에 무담보대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완비한 금융기관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내지에서의 중앙은행과는 그 점에서 취지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은행다운 실체를 다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질문의 취지입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물론 이 범위 안에서 중앙은행다운 직무는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제18조의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대부는 권업은행 등과 같이 장기의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의 대부도 하도록 합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업은행은 장기의 대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공공단체도 있고, 조선에서는 거류민단이란 것이 있어서 거류민단이 차입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차입금은 권업은행처럼 비상하게 장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5년이라든가 10년이란 기간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대출한다는 것입니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10년 이내의 위치란 것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방금의 건은 대개 10년 이내입니다.

○후쿠다 마사이치(福田又一)

방금 전에 다른 여러분의 질문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17조의 1번 끝에 “조선총독이 지령하는 확실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위원의 답변에서는 조선에 설립한 은행으로 한정됩니까? 내지에 있는 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의 정부위원 설명에서는 내지 은행의 유가증권은 매입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조선에 설립되어 있는 것 이외의 회사 혹은 은행의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매입할 수 없는 것입니까? 토지에 구별은 없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토지에 구별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에서 유가증권은 내지의 발행과 조선에서 발행한 것을 따질 것 없이 정말로 적습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저는 조선은행의 금리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조선이 비상하게 금리가 높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미 정부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서 이러한 은행을 설립한 이상은 힘써서 금리의 저하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의 비율로 대출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일반은행과의 대조를 알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작년 12월 말의 금리로 말씀드리자면 정기대부가 일반은행은 3전 2리입니다. 그에 비해 조선은행은 3전, 당좌대부의 경우 일반은행이 3전 3리, 조선은행은 3전 1리, 할인어음의 경우 일반은행은 3전 2리, 조선은행은 2전 8리입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정부의 차입금은...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우선 5%란 견적입니다. 아니면 6%가 됩니다만...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6장은 두 개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저는 27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주주의 배당금이 연 100분의 12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것의 2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 있는데, 현재 일본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은 은행이 있고, 또 다년간 하고 있는 은행에서도 12%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100분의 12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2% 이상의 배당을 했을 때가 아니라면 정부는 납부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거의 그러한 경우는 좀처럼 용이하게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비율까지도 조금 내린다는 건에 대하여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100분의 10로 한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이것은 정부의 납부금이기 때문에 대부금은 우선 내지의 은행에서도 일본은행은 100분의 12의 배당을 하며, 다른 은행도 우선 보통 100분의 12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립 시기에 속하는 은행은 거기까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 내지의 은행에서도 지방 농공은행, 이와 같은 것은 정부에서 이익배당에 제한을 붙여서 100분의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배당은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100분의 12 정도의 배당까지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100분의 12 이하로 제한한다는 말은 내지의 예와 비교하더라도 꽤나 가혹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조선 같은 곳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곳이며, 100분의 10 등이라는 것으로 제한을 붙이는 것은 흑독함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12%를 초과한다면 2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의 납부금은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고 정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100분의 12로 배당을 한다는 것은 먼 장래에는 없으리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약 보통이라고 한다면 이 은행은 특히 100분의 12 이상의 배당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은행의 전신이었던 제일은행의 영업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히 100분의 12 이상의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은행은 제일은행에서 권리를 계승했을 때 788만 여 엔을 무이자로 제일은행에 융통했습니다. 그 결과로 788만 엔은 20년 기간의 연부(年賦)로 이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통의 영업상태가 되므로 100분의 12 이상의 배당을 한다는 것은 그리 곤란하지 않으리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지금 정부위원의 답변에 따르더라도 일반의 은행은 100분의 12의 배당에 그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은행도 100분의 12에 그치며, 그렇게 한다면 언제가 되더라도 이러한 납부금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분의 12더라도 납부금은 있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 때문에 100분의 12를 초과할 때에는...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100분의 12일 때는 없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없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초과한다면 배당은 100분의 12에 그치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

고는 해도 비율을 초과한 것의 2분의 1만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그렇다면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만, 조문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대답으로 보면 이익금이란 의미처럼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변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그렇더라도 그 배당금으로 실제 배당한다면 12% 이상에 달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그 배당을 12%에 그치게 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경우에 배당은 12%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공납금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2%의 비율을 넘었기 때문에 은행은 그것을 배당하려고 하면 적립금으로 하려하므로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12%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과분은 절반을 정부에게 납부한다는 의미…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또 묻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읽더라도 지금 정부위원의 답변과 같이 읽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일단은 정부위원이 이것을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도 이것은 그와 같이 읽을 수 없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불입자본에 대하여 1년 100분의 12의 비율을 초과할 때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익배당액이란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이익배당액이 100분의 12의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그거라면 이익금이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액이라고 한다면 주주에게 건네는 것이 배당, 이익금이란 의미라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것을 이익금이라고 적는다면 알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이익배당액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익금이라 하면 보통의 총이익금에서 총 손해금을 제외한 것을 이익금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익금 가운데서 상여도 취하고, 법정 적립금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것으로는 취하고, 그 나머지를 배당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자를 알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적당할 것 같은 문자로 고치더라도 좋겠습니다만, 의미는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입니다.

○사카키다 세이베(榊田清兵衛)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정부위원의 말씀 가운데 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과 기타의 상여금이나 무언가를 뺀 것을 순이익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으로서는—그 순이익 가

운데 적립금을 빼고, 그리하여 배당금이 나옵니다. 26조의 적립금은 100분의 8 이상, 그리고 100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지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 27조에서의 배당액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키오카(秋岡) 의원의 말씀처럼 100분의 12란 것에 특수은행의 이익배당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배당이란 실제로 결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길만한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위원의 말씀은 다소 그 순이익이 100분의 12 비율을 넘은 경우,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순이익은 세간에서 말하는 단어로, 은행의 계산에서는 순이익금 가운데서 총 손해금을 뺀 것을 이익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익금 가운데서 법정적립금을 삼고, 결손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중역의 상여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배당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당금액이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 12%일지, 15%일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이 12%로 배당하고, 그 후에는 적립금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우에 배당은 12%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으므로 납부금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이미 100분의 12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적립금으로 할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의 절반은 정부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부차적인 문제로서, 정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사카키다 세이베(榊田清兵衛)

그렇다고 해도 26조 적립금의 법정적립을 여기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100분의 8 이상, 100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후쿠다 마타이치(福田又一)

100분의 50이더라도 혹은 100분의 60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그것은 이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로 이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법조문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부의 의미를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미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며, 정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법정적립의 건은 그러므로 좋겠다고 하여 이 이익배당의 평균을 위해서 적립합니다. 이쪽은 어떠한 방식의 계산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도 법정적립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익금 가운데서 최저액 즉, 100분의 2를 빼고 그 다음을 초과액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

입니까? 이것도 역시 그 가운데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물론 그것은 그 안에 넣을 생각입니다. 자본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100분의 8, 이익배당을 평균으로 하기 위해서 100분의 2 적립하는 것은 이 은행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이러한 적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적립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 쪽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방금 어느 분의 질문처럼 공납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100분의 8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일을 정부가 인정할 염려는 없습니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좀 여쭙고 싶습니다만, 이 27조의 끝 항목은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액도 누구든지 100분의 12 비율로 배당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보면 이것은 세금도 아닙니다. 별도로 이러한 2분의 1을 정부에게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납부한다는 것은 다른 은행에게는 거의 없는 특별한 무엇으로 일본은행에도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특히 조선은행만 이것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에 대하여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외국에서도 중앙은행에는 정부상납금을 내도록 한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형태를 바꾸어 태환권 발행세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행은 이를 이익의 분할납부로 개정하였습니다.

○하마오카 코우테츠(濱岡光哲)

그렇다면 역시 발행세에 해당하는군요.

○이나무라 다츠지로(稻村辰次郎)

21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선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교환하는 경우에 “금화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행 태환권을 금화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제22조에 대해서도 일본은행 태환권을 지불준비의 금화 지은(地銀)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일본은행 태환권은 아시다시피 언제라도 금화와 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기서 정화준비 중에 일본은행의 태환권을 추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는 일본은행 태환권을 추가해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사정으로, 교환 청구를 해오는 자를 보면 대부분 내지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금화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1개월에 몹시 근소합니다. 거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모두 태환권을 청구합니다. 이러한 사정입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하므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본은행의 태환권을 그대로 준비하여 언제라도 교환을 요구할 경우 일본은행 태환권을 인도하는 편이 여건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조선에서 금은 알고 계신 대로 충분한 산출이 있기 때문에 금화로 이러한 태환준비를 대비

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조선에서 생산된 금은 일본은행의 금고에 적립하고 있으며, 실제의 금괴는 일본은행 쪽에 쌓아두고 있으므로 조선은행은 오히려 태환권으로 준비하여 대비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또 준비가 불안해질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오테라 겐키치(小寺謙吉)

잠깐 제27조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므로 질문합니다. 임원의 상여금입니다. 이것은 비상하게 쌓아두고 은행이 상여를 내주게 된다면 자연히 정부에게 낼 납부금이 감소하게 될 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취체법을 쓰게 됩니까? 또 이제까지 한국은행이 해온 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또 그 위치의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것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임원의 상여금은 모두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러한 종류의 은행으로서 100분의 10 이내-이러한 것으로 몹시 많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대로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배당을 할 때는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코 많은 상여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거의 상여금이란 명칭만 있어서 몹시 근소합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이러한 한국은행의 태환권의 발행고는 43년 12월이 2천 몇 만 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증준비의 종류와 액수-이 사이에 비율만은 조금 알겠는데 액수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작년 12월의 은행권 발행액이 2,016만 3,900엔입니다. 그 가운데 정화준비가 702만 5,750엔, 그리고 보증준비가 1,313만 8,150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준비의 내역은 국채보증이 210만 2,980엔, 기타의 증권이 103만 5,170엔이란 감정입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이 제일은행으로의 은행권 상각자금의 대부분은 현재도 7백 얼마라는 액수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물론 담보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담부는 어떠한 종류의 것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것은 국채증권입니다.

○가스야 기조(粕谷義三)

방금 답변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정화준비가 702만 얼마인데, 그렇다면 현재의 보증준비에 따른 발행액이란 것은 2,000만 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 700만 엔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 위에 이번 이러한 법안에서 1,000만 엔의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방금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 은행을 설립한 당시, 즉 재작년 11월 당시에 발행하고 있던 은행권의 액수는 연말이었는데 1,300여 만 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계한 당시는 좀 더 은행권의 수가 내수였던 1,180만 엔이었고, 은행 설립 당시의 감정으로는 1,180만 엔이 총 발행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생각으로는 우선 이 2,000만 엔 정도의 보증준비로 좋겠다고 하여 그 보증준비의 액수는 2,000만 엔으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도 좀 더 이것을 증가해 두는 편이 좋지 않을지, 한국 경제의 앞날은 도저히 이 정도의 액수로는 그칠 수 없을 것이고, 신진의 나라이므로 서둘러서 발행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좀 더 이 보증준비의 액수를 높여 두는 편이 좋겠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이 1,000만 엔 내외의 발행액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우선 2,000만 엔으로 해 둔다는 것으로 재작년 한국은행이 성립했을 당시에는 2,000만 엔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설립 후 1년을 경과하였고, 작년 연말의 발행고를 보면 2,016만 엔에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의 설립 당시의 배가 되는 액수의 태환권 발행액으로 올라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태환권 발행액뿐만 아니라, 기타의 통화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즉, 재작년 연말에는 전체의 통화를 합쳐서 2,000만 엔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는 2,700만 엔이라고 하는 것처럼 증가하였습니다. 그러한 증가가 있게 된 원인은 점차 한국의 경제상태도 발달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수반하여 정부 쪽의 일도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느낀 것은 교통기관이 점차 개발되어 감에 따라-시골에서도 물물교환이 있었습니다-물건과 물건의 교환이 있었으므로 화폐를 사용하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교통기관이 자연히 개발되어간 결과 시골에 이르기까지 화폐가 보급되어 물물교환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금전매매가 이루어져 화폐를 이용하는 용도가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음과 기타의 신용증권 쪽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어쨌든 사실상으로 화폐를 필요로 하는 일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어찌 하였던 여기에 장래 조선에서 아직 이 정도 액수로는 부족을 느낍니다. 물론 이후에도 발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지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내지는 무릇 5억의 화폐를 유통하고 있고, 그 5억을 가령 5천만의 인구로 나누어 보면, 1인 평균 10엔 정도의 액수에 해당합니다.

대만 같은 곳도 무릇 1인 평균은 6엔 전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1,300만의 인구로-조선인만 1,300만-1,300만의 인구에 대하여 2,700만 엔의 화폐 유통고는 1인에 대하여 2엔 정도에만 해당합니다. 이것은 조선이 빈약한 나라라고 해도, 1인에 대하여 2엔 정도의 할당은 결코 장기간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 걸쳐 발행액이 두 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 정도가 되면 대략 3,000만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선의 현재 1인 평균 2엔이란 것이 두 배의 액수로까지 도달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2,000만 엔의 보증준비금액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2,000만 엔으로 둔다면 곧바로 또 개정안을 제출해야만 하는 시기에 도달할 지 그렇지 않을지, 그보다는 무릇 적당한 정도로 이것을 3,000만 엔으로 증가시켜 두는 것이 실제로 적당할 지 그렇지 않을지, 이러한 생각을 하여 3,000만 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넘어가겠습니다. 제7장.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저는 이 35조의 경우 무엇을 하기 위해 한국은행조례의 37조 제1항, 즉 “한국은행 감리관은 언제라도 한국은행의 금고장부와 제반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는 개별조항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래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금고장부, 기타의 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건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리관을 설치하여 그 감리관은 적어도 1주간에 1회는 한국은행에 출두하여 엄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기에는 1주간에 2회 정도 나와 임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엄중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점에 대하여만 조사한 것입니까? 지점까지도 역시 검사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이것은 본점과 지점 어느 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여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본점에서 검사를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점 쪽에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인 업무는 본점에서 중역회의로 마치기 때문에 그 중역회의에 출석하여 감리관이 항상 의견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제8장으로 넘어갈까요?

(“이의 없음”이라고 한 자가 있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제8장 부칙까지 함께 논의에 붙이겠습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저는 제43조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 43조에서 요컨대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이라고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 그리하여 조선은행은 곧 전에 한국은행이 설립했을 때의 본 법에 따라 설립했던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구한국은행과 신조선은행을 접속하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명칭만 바꾸었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은행의 권리 의무를 조선은행이 계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합니까? 그 건을 확실해 해둡시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계승한다는 정도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구한국은행이 한 행위, 예를 들어 태환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이 조선은행이 태환권을 발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구한국은행이 했던 행위는 모두 신은행이 한 것으로 법률은 간주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하등의 구한국은행이 해온 행위에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립 기한 같은 것도 한국은행이 설립한 때부터 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다카야나기 가쿠타로(高柳覺太郎)

그러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라고 한다면 제2항에서 “은행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이 조항은 역시 “변경된 것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제44조와 제45조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입니까? 한국은행의 임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아울러 제일은행의 은행권이란 것은 이미 한국은행의 조례로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한국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조선은행이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오직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이 된다면, 즉 43조의 의미라고 한다면, 물론 한국은행의 임원은 조선은행의 임원으로서 취직했다고 당연히 간주하게 될 터입니다. 발행한 은행권도 역시 당연히 조선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 44조와 45조란 것은 빈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며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첫째로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아닌가란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같습니다. 이 법률에서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 조항에 드러낸 것입니다. 제43조는 한국은행이 한 행위는 조선은행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특히 44조로 가지고 와서 정부에서 명한 바, 총재 이사 기타의 중역을 조선은행에 취직했다고 간주한다는 명문을 두어 명확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45조의 은행권 발행은 제43조의 한국은행이 한 행위라고 한 것으로 포함하더라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제일은행권을 한국은행에서 계승하고, 다시 이 은행에게 계승된 것이라고 이렇게 2중으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편이 비전문가에게는 알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키오카 기이치(秋岡義一)

36조입니다만, 여기서 “매 영업연도에서 1년 100분의 6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가 가진 주식에 배당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 100분의 6 비율을 넘지 않는다면 정부로는 배당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정부위원,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그 말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산회합니다.

오후 2시 45분 산회.